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988

제출년월일 : 2010. 8. / 6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무한돌봄사업을 단순하고 일시적인 금전지원위주의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통합적 서비스 제공 및 장기적인 사례관리 시스템으로 확대재편하여, 센터를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control tower로서 운영하기 위함

□ 주요골자

- 가. 안산시민에게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산시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함(안 제1조).
- 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함(안 제5조).
- 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안 제12조).
- 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를 둠(안 제13조).

□ 제정 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340,000천원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10. 1. 29 ~ 2010. 2. 17(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민에게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산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선적용) 이 조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홀몸노인, 저소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차상위계층 및 기타 저소득 위기가정 등을 수혜대상자로 정하여 다른 주민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무한돌봄센터 및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제3조(설치)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안산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및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센터를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은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
3. 시 무한돌봄센터 솔루션회의 참여
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 제5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민간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의 지도·감독 하에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인력 채용 시에는 시와 협의하고 근무조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수탁자가 센터의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 제6조(조직 등)** ① 센터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네트워크팀으로 구성한다.
- ②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1. 센터장 : 행정직 또는 사회복지직 5~6급 공무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자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센터 및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직 및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의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수탁 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하거나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9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0조(원상복구) ① 수탁자는 센터의 사용 중에 발생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5.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무한돌봄센터 위원회

제13조(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심의 · 의결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자문

3.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 의결

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 · 자원연계 자문 · 현장개입 · 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개인, 단체, 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지원

④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12.31.까지로 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센터 업무담당과장과 센터 및 네트워크팀 수탁기관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 단체의 대표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솔루션위원회) ① 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 단체의 대표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솔루션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6조(임기)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기관·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솔루션위원회의 회의는 소집사안에 따른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2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24조(보고)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손괴 또는 멸실된 경우

② 전항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전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유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시장에게 매년 반기 운영상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반기 운영상황을 포함한 결산 보고 시 하반기 운영상황의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구성된 센터·네트워크팀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1988
----------	------

제안년월일 : 2010. 9. 3.

제 안 자 : 경제사회위원장

1. 수 정 이 유

- 조례안 제1조 목적에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조례의 목적에 조례의 근거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를 추가함(안 제1조).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목적)의 “위한”을 “위하여”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를 추가한다.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민에게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안산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제34조에 따라-----</u> -----